

행정안전부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연 월 일	2026. 10. 1.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농어촌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지역 사랑상품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39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한 농촌·어촌 지역에 소재한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의 기준

- 1) 식료품·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거나 있더라도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읍·면지역, 농림어업용 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이 없는 면 지역으로 정함
-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7. ~ 11.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생산자단체 사업장의 가맹점 기준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범위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농촌 또는 어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중 식료품·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읍·면 지역
 - 가. 해당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없는 지역
 - 나. 가목에 따른 가맹점이 있으나 지리적 위치, 교통수단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
 - 다. 가목에 따른 가맹점이 있으나 판매품목, 영업규모 또는 영업형

태 등을 고려할 때 주민에게 필요한 식료품·생활필수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

2.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중 농림어용 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 해당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이 없는 면 지역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사업자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생산자단체 사업장의 업종 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표준산업분류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 제외 업종
47112	대형 마트
47121	슈퍼마켓
47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4721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
4722	가공식품 소매업
47231	음료 소매업
4751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47512	공구 소매업
47519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47851	화초 및 식물 소매업
4785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비고

1. 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4-2호에 따른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 둘 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에서 주로 영위하는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생산자단체 사업장의 가</u> <u>맹점 기준 등) ① 「지역사랑상</u> <u>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u> <u>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u> <u>조제2항제2호 단서 각 목 외의</u> <u>부분에서 “지역범위에 관하여</u> <u>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u> <u>준”이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u> <u>농촌 또는 어촌 중 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u> <u>을 말한다.</u> <u>1.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u> <u>위하는 사업장 중 식료품·생</u> <u>활필수품을 판매하는 사업장</u> <u>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 읍·면 지역</u> <u>가. 해당 업종과 동일하거나</u> <u>유사한 업종의 지역사랑상</u> <u>품권 가맹점이 없는 지역</u> <u>나. 가목에 따른 가맹점이 있</u> <u>으나 지리적 위치, 교통수</u> <u>단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u> <u>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지</u> <u>역</u>		

다. 가목에 따른 가맹점이 있
으나 판매품목, 영업규모
또는 영업형태 등을 고려
할 때 주민에게 필요한 식
료품·생활필수품을 원활
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지
역

2.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
위하는 사업장 중 농림어용
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
우 : 해당 업종과 동일한 업종
의 사업장이 없는 면 지역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사업자 유형
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이란 같은 호 각 목
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
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을 말한다.